

##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청소행정과)

|       |                       |
|-------|-----------------------|
| 의안번호  | 275호                  |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2024. 4.)       |
| 의 안 명 |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검 토   | 전문위원 정진만              |

###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른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명 : 성북구 재활용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6 (상월곡동, 성북구 재활용센터)
- 규 모 : 재활용센터 내 1~3층

| 토 지      |      |     | 건 물        |    |         |                 |
|----------|------|-----|------------|----|---------|-----------------|
| 지목       | 면적   | 소유  | 구조         | 층  | 연면적     | 용도              |
| 잡종지<br>등 | 671㎡ | 구유지 | 철근<br>콘크리트 | 1층 | 65.54㎡  | 공용면적, 주차장       |
|          |      |     |            | 2층 | 343.36㎡ |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
|          |      |     |            | 3층 | 336.27㎡ |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
|          |      |     |            | 1층 | 24.18㎡  | 휴게공간, 공용면적, 주차장 |
|          |      |     |            | 4층 | 337.66㎡ | 공용면적, 사무실, 교육장  |
|          |      |     |            | 옥탑 |         | 태양광 설비, 녹지공간    |

나. 위탁기간 : 3년(새활용센터 준공 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다.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라. 수탁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소재인 자
- 재활용사업(가전·가구수리, 판매 등) 경험이 3년 이상인 법인과 단체(개인)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재활용 판매품 수거, 전시 및 판매, 사후 서비스, 잔재물 처리
- 취약계층 지원 및 재활용 홍보 등
- 1층~3층 시설물 사용 관리
- 수리소 운영

바. 위탁비용 : 수익을 동반하는 시설로 구 예산지원 없음

사. 사용료 부과

-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토지 및 건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연간 사용료 부과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sup>1)</sup>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재활용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sup>2)</sup>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으로,

#### ○ 성북구 재활용센터 현황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6(상월곡동, 성북구 재활용센터)
- 시설현황 : 대지 671㎡(약 203평), 건물 1,107㎡(336평), 지상4층  
재활용센터의 1~3층을 재활용센터로 사용
- 위탁기간 : 2024. 7 ~2027. 6(3년)
- 위탁사무 : 재활용품 수거, 전시, 판매
- 사업기간 : 2020. 1.~2024. 6.
- 사 업 비 : 76억7,600만원(시비 41억2,000만원, 특교 17억7,800만원,  
구비 17억7,800만원)

1)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舊)재활용센터는 2001년 건립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취급되는 상품이 중고품과 일부 중소기업 가구 등으로 구민 이용이 적고,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거의 상실 되어 있었음.

이에 구는 다양한 중고품을 구매·판매, 재활용·업사이클 관련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자원순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비 41억원과 특교 17억원, 구비 17억등 총 76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됨.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3)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sup>4)</sup>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성북구 재활용센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재활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 관련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바,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성북구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sup>5)</sup>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